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(기금의 사용)

8.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,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34조제8호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8호의 신설 규정은 2017년
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사항부터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기금의 사용) 법 제49조 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제34조(기금의 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(신설)	8.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,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
<u>부칙</u>	<u>부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제34조제8호에 관한 적용례)</u> <u>제34조제8호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 의결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사항부터 적용한다.</u>